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	년 제 호

결정일자	년 월 일		
청구인	성명(명칭)		
	생년월일(등록번호)		
	대리인	성명	
		생년월일	

년 월 일 귀하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결정 주문	[] 청구를 인용(認容)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. [] 청구를 기각한다. []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,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. [] 청구를 각하한다. **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: 원 /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: 원**
결정 이유	[] 청구 사항에 대한 소명 부족 []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*(예시 : . . . 에 지급받은 금_____원 확인)* [] 기타 사유()

·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·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환부하므로,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·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환부하므로,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. . .

○○공소청 ○○지청

검사 (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